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54
----------	-----

제출연월일 : 2008. 6. 23.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용조문을 정비 함(안 제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장애인복지법 제4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로,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한다.

제2조중 “복지관”을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이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중 “이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제6조 각 호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2중 “이용료”를 각각 “사용료”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3조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2조중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12조중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제6조 규정의 대전광역시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